

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중개정령(안)

● 산업자원부 ●

산업자원부령 제 209 호

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의2제4호 및 제5호중 “보호자가 사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소유·사용하는”을 각각 “보호자가 소유·사용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승용자동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받은 보호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이러한 사용기간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보호자가 계속하여 승용자동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